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교육훈련기간의 연가차감 개선 (안 제10조제5항)

가. 개정 이유

현재 교육훈련은 부대훈련과 학교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필수교육을 받았음에도 연가가 차감된다는 문제점을 개선

나. 개정 내용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군 외부기관 및 학위과정 교육훈련 시에만 차감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제도 운영을 고려한 실효성 제고 및 장병 휴가권 보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연가저축 선택권 확대 (안 제10조의2)

가. 개정 이유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연가보상비가 선지급되는 제도를 개선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며, 연가소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나. 개정 내용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을 삭제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인 희망에 따라 연가보상비 또는 연가 저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연가소멸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연가 사용과 휴가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가 소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청원휴가 개선 및 신설 (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및 기대수명 증가 현실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유·사·조산 위험 시 자택가료 (10일)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5.12.1.)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
- 가족간호 청원휴가에서 자택가료를 제외하는 것을 명시
 - * 현역장병 본인은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상 '호스피스, 항암, 이에 준하는 중증질환의 치료'만 승인 후 자택가료 가능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외)증조부모의 사망휴가 (3일) 신설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전역전 휴가 개선 (안 제13조제3항)

가. 제·개정 이유

군 복무를 통해 장기간 국가에 기여했음에도 명예전역, 정년전역자와 다르게 전역 전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임기제 군인의 처우 개선

나. 제·개정 내용

전역 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역(임기제 군인)을 포함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장기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군 복무 가치 증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5. 전역전 휴가 개선 (안 제13조제4항)

가. 제·개정 이유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기술하고 있어, 제도운영 현실과 일치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나. 제·개정 내용

보상휴가 기준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으로 개정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제도운영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